

8. 建設技術管理法中改正法律(案) 立法豫告

建設交通部公告 第1996-244號 1996. 8. 29

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주요골자

- 가.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설계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설계심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.
- 나. 설계·건설자재 및 시공에 대한 표준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.
- 다. 철강재구조물을 생산·제작·가공하는 공장에 대하여 보유시설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공장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.
- 라.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비에 일정률의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계상토록 함.
- 마.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설비·소방등 설비감리에 대한 총괄을 할 수 있도록 함.
- 바. 감리원이 책임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설계업무를 일부 허용
- 사.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자는 학·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, 건설기술자가 자격정지나 업무정지기간중에는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.
- 아. 제재처분중 경미한 사항은 행정형벌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일부 완화함.

개 정 이 유

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계 및 건설자재의 표준화 촉진과 품질 및 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하고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감리원이 책임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설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,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의 건 제 출

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(참조: 건설지원실 기술정책과장, 전화: 504-9022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

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주택회보